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8. 23.(금) 14:31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1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성종원 행정법무담당관님,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성종원 행정법무담당관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성종원 행정법무담당관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4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및 방송기반국 소관 안건의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41-160)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기석 재정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기석 재정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부과 의 형평성,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중기 재정상태 변화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별 최종징수율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반을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의견수렴 및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9년 6월 12일 고시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19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쳤고, 7월 24일에 방통위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7월 30일 법제처 행정규칙 사전검토에서 이상이 없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8월 8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안동의를 통보 받았습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 비중요규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 주요 내용입니다.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산정기준을 방송사업의 중기 재정추세 등을 반영하여 일원화하여 분담금 부과 의 형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던 분담금 징수율을 중기 추세를 반영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였고, 사업자별 분담금 산정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분담금 부과 의 형평성 강화는 국정과제로서 현행 지상파의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 징수율 결정체계를 기초로 기본징수율 산식을 도입하여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채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최근 방송사업자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징수율의 7.66%를 감경하는 조정계수를 기본징수율

산식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연도 기본징수율이 전년 대비 100분의 15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값으로 기본징수율 상한을 설정하여 급격한 변동을 제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징수율 감경입니다. 방송사 재정상태, 시청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 방송은 기본징수율의 1/3, 종편·보도채널은 14.23%를 추가 감경하였습니다. 「지역방송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지역방송 및 영세한 중소방송사들에 대해서는 지역성·다양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의 1/3을 감경하였습니다. 단, 당기 순손실 발생 시에는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기본징수율의 1/2를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편·보도채널은 매출액은 지속 증대되고 있으나 당기순손실 누적, 지상파방송과 달리 유료방송 시청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의 14.23%를 추가 감경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3년 주기별로 재검토한 후 방송사별 징수율을 매년 고시하던 방식에서 방통위가 징수율 산정기준을 고시하면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당해 방송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방송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3년마다 징수율 산정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분담금 산정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시행령에 따른 분담금 면제·경감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기본징수율·감경사유 등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제반 정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예고 시 주요 들어온 제출의견 및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JTBC에서 들어온 의견입니다. 종편의 추가 감경비율을 높여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종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파와 별도로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편의 징수율 추가 감경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분담금 징수율 결정체계를 일원화하면서도 매체별 시청자 범위,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편·보도채널의 기본징수율을 지상파에 비해 14.23% 추가 감경했으므로 종편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감경은 필요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방송협회 의견입니다. 종편의 추가 감경비율을 축소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종편의 경영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누적결손에 따른 경감은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고시상의 추가 감경비율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편을 지상파의 징수율 결정 체계에 편입하여 징수율을 인상한 것은 최근 개선된 경영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종편·보도채널에 대하여 감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지상파와 종편의 매체별 가시청자, 종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종편에 대한 개정안의 감경비율인 14.23%는 지상파만 직접수신하는 비율인 4.3%보다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안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편에 대한 징수율 감경비율은 지상파만을 직접수신하는 시청자 비율뿐만 아니라,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MBC의 자사 감경비율 확대 요구안입니다. MBC도 공영방송이므로 KBS·EBS와 동일하게 방송운영의 공공성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징수율의 1/3을 추가 감경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방송운영의 공공성’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을 정부가 전액 출자한 KBS와 EBS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습니다. 본 규정 대상을 다른 방송사로 확대할지 여부는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번째, EBS입니다. EBS도 자사 감경비율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광고 관련 매출액 규모가 작거나 방송광고 규제 수준이 높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감경비율을 확대하고, 지상파 당기순손실에 따른 1/2 추가 감경 조항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기본징수율의 7.66%를 감경하고 있고, 분담금은 징수율 산정기준에 따라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비례해 징수되므로 매출액이 적은 방송사는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외 징수율에 대한 추가 감경 적용 여부는 방송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고시 개정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방송사 및 유관단체에서 제출한 의견들은 고시 개정안 마련 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미 고려되었던 사안이며, 따라서 금번 고시 개정 시에는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추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시점인 3년 뒤에 방송시장 상황, 사업자별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향후 일정입니다. 금일 의결해 주시면 개정 고시안을 관보게재 의뢰할 것이고, 8월 30일 개정 고시안을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9월 초에는 분담금 산정내역 등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19년 9월, 11월 2회에 걸쳐 분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지난 6월 고시 일부개정안 보고 때 분담금 부과 정책 논의의 출발점은 타당한 방법론 제시와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사업자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사업자의 의견들은 고시 개정안 마련 때 제기했던 것과 동일하고, 그 수용 여부 또한 사전 의결 조율 과정에서 이미 검토되었던 것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의 목적이 방송사업자의 중기 재정상태 변화 등을 반영하고,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산정 고시하던 분담금 징수율을 3년 주기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예측가능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반영된 내용은 3년 뒤 재검토 기한 도래 때 방송시장의 상황과 사업자별 재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송환경의 변화와 방송광고 매출 하락 추세 속에서 앞으로 3년 동안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기준의 적정성과 징수 대상자 확대 등 중기 과제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분담금 징수율 체계를 지상파와 함께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징수율을 일원화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편과 보도채널 징수율이 인상됐습니다. 매년 0.5%씩 매기다가 1.5%까지 갔는데 지금 1.9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사업자 견해가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적용을 하면 올해 분담금이 중앙 지상파는 약 60억원 정도 덜 내게 되고, 또 지역·중소방송은 24억원을 덜 내게 되고, 여기에 반해서 종편은 12억원을 더 내고 보도채널도 4억원을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기석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여기에 대해서 특히 종편과 보도채널은 지상파와 달리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유료방송인데 왜 이렇게 일원화시키느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논리로 설명하는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김기석 재정팀장

- 당초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나왔습니다만 직접수신비율, 주파수를 사용하는 특성을 감안해서 종편에 대해 14.23% 추가 감경을 해서 그것이 종편 쪽에서 100%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추가 감경을 해서 의견을 반영해 줬습니다. 반면에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은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추가 감경해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부분이 결부가 되다 보니까 100% 사업자들이 만족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기존 종편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현재 상태로는 많은 부분에서 인상된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종편, 특히 JTBC 같은 경우 결손비율이 높아서 금년도에 1.93%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결손비율을 감안하면 내는 액수는 5.93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다시 정리하자면 종편이나 보도채널에 대한 배려가 어느 부분으로 나타났습니까? 징수율을 추가 감경 14.23% 하나와 또 어떤 혜택이 있지요? 종편에 대해 또 어떤 배려가 있었지요?

○ 김기석 재정팀장

- 일단 14.23% 추가 감경해 줬다는 수치가 가장 큰 것이지요.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리고 상한제를 도입했지요?

○ 김기석 재정팀장

- 기본징수율을 급격하게 1년 내에 지상파와 동일하게 맞출 수 있었지만 단기간에 지상파 구간에 편입되는 점을 감안해서 당해 연도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150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종편들, 또 보도채널사업자들 의견이나 반발이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 김기석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수렴 기간에 다시 종편사업자들이 냈던 의견은 기존 저희 연구반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나왔던 이야기들이었지, 그밖에 다른 의견이 다시 추가적으로 제기됐던 의견은 아닙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지역·중소방송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징수율의 1/3을 감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기석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여기에 사업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기석 재정팀장

- 저희가 예산 작업이나 각종 과정 속에서 보면 지역·중소방송이 열악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6월 보고안건 끝난 다음에 보도자료 냈을 때 추이를 보면 지역방송이나 영세한 방송사업자들이 가장 환영하는 안이었습니다. 사실 액수 자체는 각 사별로는 크지 않을지라도 상징적인 효과도 컸었고, 어쨌든 실효적인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지역·중소방송은 혹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때는 1/2까지 감경하는 것이지요?

○ 김기석 재정팀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팀장님이 부위원장님 질문에 어렵게 답변을 하시네요.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그리고 인허가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CJ ENM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업자에 대해 공적책무 차원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지금은 논의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방송사업 매출 기준으로 하느냐, 광고매출 기준으로 하느냐 이렇게 사업자별로 징수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쪽은 많이 낸다고 불평하고, 적게 냈던 특히 신생사업자라고 해서 징수율을 거의 하지 않았던 종편의 경우, 다른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징수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최근까지 종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금액만 징수하면서 나름 신생사업자로서 특혜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렇게 방발기금 징수 부과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한 것은 잘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광고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 인상됐는데, 또 다른 사업자는 얼마 감액해 줬다'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광고시장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그런 불평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안 이전에 사업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저희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 김기석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 안건에서는 마치 우리가 사업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안을 관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전 단계에서 사업자들의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서 안을 한 차례 수정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석 재정팀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이 안건 처리 이후 납부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기금이 실제로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공적책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하는데 지금 징수 부분에서의 형평성이나 합리성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확보가 되는데 방송발전기금 사용, 지출 부분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특정 분야, 특정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징수 부분에 있어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관련부서에서는 지출, 사용의 합리성·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 재정팀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내용은 원래 보고할 때부터 충분히 다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 전에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발전기금을 징수

해서 실제로 발전기금을 내는 쪽에 얼마나 혜택이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많습니다. 발전기금을 내는 쪽에 우리가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은 앞으로 더 많이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와 EBS 두 공영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1/3 추가 감경하는데 공공성이 과연 얼마나 강화되고 있느냐, 잘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추가 감경할 만큼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방송사업자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별로 그렇지 못한 점이 많고,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도 되어 있는데 그 점을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직접수신율이 매우 떨어져 가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상파를 특별히 허용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종편의 경우에는 사업을 우리가 승인해 줬다는 측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방송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지상파와 종편간의 관계 설정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정당화 문제, 또 기금을 걷는 비율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현실을 반영해서 연구하여 현실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상당히 노력해서 현실 타당성을 갖도록 많이 개선했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런 방송 현실을 잘 반영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징수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6. 보고사항

가. 가이드라인 일몰제·실명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가이드라인 일몰제·실명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종원 행정법무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성종원 행정법무담당관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도입 등 범정부적으로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위해 ‘1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가이드라인 일몰제·실명제’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가이드라인 일몰제·실명제란 가이드라인에 재검토기한을 도입하여 사후 유지 관리를 제고하고, 담당부서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관련 의견이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문의에 직접 대응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추진경과입니다. ‘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방송통신 정책아이디어 국민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가이드라인 책임관리제’가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8년 5월부터 가이드라인

일몰제·실명제를 시행하고 정부혁신 실행계획에도 반영하였습니다. '19년 7월 저희가 가이드라인 일몰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일몰제가 미적용 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몰제와 실명제를 확대하기 위해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일몰제가 미적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3년마다 담당부서에서 법령이나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타당성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발령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현행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하게 될 경우에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실명제 관련 홈페이지 공개 관련입니다. 가이드라인 점검결과, 현재 27개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그중에서 26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으로서 일반에 공개될 경우 기술적 조치 우회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몰제 관련입니다. 가이드라인 점검결과, 27개 가이드라인 중 현재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등 5개 가이드라인이 일몰제를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몰제 미적용 가이드라인 22개 중 18개는 일몰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타 부처와 공동 소관이어서 일몰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과 '명칭은 가이드라인이지만 사실상 내부지침의 성격이 강한 가이드라인' 등 4건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을 제외 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가이드라인 일몰제·실명제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몰제와 실명제 시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미시행 중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일몰제와 실명제를 일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규제 받는 측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기관의 공직자가 왜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도입에 의한 것입니다. 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 재검토기한을 정해서 규제를 받는 사업자에게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 행위는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부의 방침을 밝히는 것이 규제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 차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일몰제 도입으로 가이드라인 형태의 규제를 매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것은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존속하는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고안건의 접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방송통신규제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입니다. 다행히 오늘 안건이 올라와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추진 배경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정부가 규제혁신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규제와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전체 방통위 소관 법령 규제를 일제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법무담당관과 제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심사가 진행됐지요? 전체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 **성종원 행정법무담당관**

- 저희 행정규칙과 건의과제들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 행정규칙은 24건이 있었는데 24건을 사실상 검토는 다 했습니다. 건의과제들도 수십여 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서면 회의와 대면회의를 통해 다 검토하였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과 저는 수시로 이것을 보고받고 회의도 주재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것이 명색이 우리 위원회가 규제위원회 아닙니까? 규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또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지와 달리 선뜻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규제개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면 어느 정도 지나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처장님도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 국·과에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민간에서 오신 규제개혁심사위원님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위원은 저와 기획조정관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내놓을 만한 과제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이드라인 일몰제 같은 경우도 시한이 지나면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다시 갱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민들이 많이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사무처장님 중심으로 해서 국·과에서 규제개혁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소위 공공 분야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지금 설명자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일반 기업이나 국민을 규제하는 내용이 아닌 방통위와 소속·산하기관 등 내부 관련자를 대상으로 갑질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내부 지침이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자료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향후 계획 바로 위에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취지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런 뜻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김동철 기획조정관

- 부위원장님, 이것은 공공기관의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안건이 아니고, 일정 주기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중 대부분 규제 관련한 것들이라 이것이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으면 주기적으로 규제를 없애라, 이런 차원에서 일몰제를 가이드라인마다 3년 주기로 하는 것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설명이 마지막에 이것이 붙어 있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묻는 것입니다.

○ 성종원 행정법무담당관

-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다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름은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국무조정실에서 이야기하는 저희 방통위와 각 개별부처에 어떻게 보면 내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용이 민간 사업자나 대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으로 명칭은 되어 있지만 일몰제를 제외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실제 내부 운영을 위한 규정일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표철수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행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나치게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시대착

오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욱 나쁜 것은 취지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을 저해하는, 또는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수정이 필요한 것들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고안건으로 올라온 가이드라인 일몰제·실명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의 내용들은 전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을 계속 점검하고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업무와 권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는 속성이, 계속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업무와 권력에 집착하지 않도록 계속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구나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총리실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주 더 과감히 검토하여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9-41-161)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지난 5월 10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승인 대상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2개사이며,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이티비씨(주)와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본문 500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종편PP와 보도PP의 재난방송 공적책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 기본계획 의결 후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기본계획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이나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결정하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후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과 배점 그리고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사전 기본계획 의결 후 발생한 변경사항 심사를 위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은 <표>를 참조하시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이 6번 항목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50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심사평가 이후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승인유효기간은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인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3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 담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현행 '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른 콘텐츠 투자금액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방송제작에 쓰이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콘텐츠 투자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콘텐츠 투자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8월 중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를 하고, 9~10월에 걸쳐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3월까지의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티비씨(주)와 (주)매일방송에 대해서는 2020년 4월부터 별도로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내년 3~4월에 승인유효기간이 끝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의 재승인 세부

계획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실시해 온 심사계획이어서 심사기본계획의 큰 방향은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세부계획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분량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본문 500페이지 이내로 하도록 제시하고, 재난·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종편 및 보도PP에 대해서도 재난방송의 공적책무를 심사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도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심사위원 선정이며, 심사과정의 엄격함과 투명성 제고 역시 중요합니다. 최근 종편 PP의 위상은 지상파방송을 일부 넘어서거나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편PP도 영향력에 비례하는 공적책무를 부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심사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종편PP의 소유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재승인 심사에서는 소유 지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일부 종편PP의 소유 지분 합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재승인 심사기간에 심사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유구조 부분이 재승인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 허 옥 상임위원

- 이것이 필수 심사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으로 재승인해서 허가 승인장을 내주기 때문에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주시지요.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오늘 보고자의 보고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특히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지난번 종편 재승인 때도 콘텐츠 제작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논란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우리 세부기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것은 사업자들에게 다 공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돼도 상관없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사업자 의견을 많이 반영한 셈이 됐는데, 예를 들면 자체제작 인력의 인건비나 또 간접비도 전부 콘텐츠 투자금액에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 의견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많이 줄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계정과목도 다 열거해서 전부 다 통지가 가는 것이지요? 다 알려진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들을 다 게재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논란의 소지를 많이 줄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무처가 많이 애쓰고 준비를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들 반응도 좋게 나오는 것이지요? 불만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100%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 김석진 부위원장

- 100%는 할 수 없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거의 수용했고, 사업자 의견 수렴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잘하셨습니다. 제작년인가요? 우리가 종편 심사를 해보니까 제작비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는 세부기준이, 또 간접비·직접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됐다는 부분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승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경을 크게 쓰는 부분이고, 아울러 저희들 심사도 굉장히 엄격하게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부계획이 마련된 것은 그 사이의 기준들보다는 개선한 것이 많아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재난방송을 별도로 50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방송평가에서도 일부는 재난방송에 관해 평가합니다만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인 유효기간이 구간별로 700점 이상은 재승인 기간이 5년, 700점 미만은 4년,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650점 아래가 되면 '조건부 재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20점대로 3년간 세 차례 연속 '조건부 재승인'이 된다면 이런 것은 패널티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세부계획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650점 미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 연속으로 몇 차례 계속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또는 일반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임위원이 꼭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지상파방송 재허가 때도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재허가 심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칙과 합리성,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사위원장 문제는 심사를 앞두고 구성할 때 다시 논의해서 그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승인할 때 소유 지분 구조나 주주 구성의 적정성은 보지 않지요? 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최초 승인 때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재승인할 때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승인 때는 심사배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특정 종편은 주주 구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특정 종편은 주주 간의 지분 변동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승인 심사와는 또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재승인과 관련 없이 현행법상 위반되면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재승인해야 할 시점까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주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는 시점이 재승인 심사기간과 겹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같이 여기에 넣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문제가 되는 사항이 시점이 언제 명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일단 재승인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재승인 시점에 문제로 확정된다면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특정 언론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이 실은 10년 전에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 허가 때, 최초 승인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지금 다시 불거져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승인 심사할 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재승인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전부 사무처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사업자에 대한 허가·재허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들을 놓치다 보면 꼭 나중에 특혜를 줬는지, 아니면 심사가 부실하게 됐는지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종편들 승인해 주고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제출도 한계가 있지만 다른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표철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방송사

업자 허가·재허가, 승인·재승인은 아마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이것이 또 전형적인 규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업무보다도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이런 사전 세부계획이 면밀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나 일정, 심사의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승인·재승인, 허가·재허가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결격사유가 없도록,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리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엔에이치엔고도(주) 등 50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9-41-162~211)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엔에이치엔고도(주) 등 50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제28호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한 50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제1항,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배경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검찰이 통보한 사항 및 방통위가 자체 인지한 사업자 등 총 56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검찰이 통보한 사업자 중 42개 사업자가 엔에이치엔고도(주) 쇼핑몰 솔루션을 이용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방통위 조사결과 해당 솔루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엔에이치엔고도(주)를 포함하여 조사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1개 사업자의 경우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인수합병을 통해 법인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인수 합병한 회사에 행정처분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이번 안건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경과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21일 식품판매 회사 (주)컬리라는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년 9월 26일 (주)컬리에 대한 방통위 현장점검 결과,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 제작사인 엔에이치엔고도(주)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8년 1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8년 3월 5일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해 왔고 ‘18년 9월~10월까지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접수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조사대상 56개사 중 가산카메라 등 50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머스크핑크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주)블루원 등 5개사는 사이트 폐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50개 사업자 중 42개사는 엔에이치엔고도(주)의 ‘e나무 시즌4’라는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42개사 중 엔에이치엔고도(주)와 위·수탁 관계가 성립하는 임대형 사업자는 5개사이고, 나머지 37개사는

솔루션을 단순 구입한 독립형 사업자입니다. 엔에이치엔고도(주)는 임대형 사업자에 대해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의 일반현황 50개사에 대한 <표>가 정리되어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5번을 보시면 (주)엘지유플러스가 있는데 (주)엘지유플러스가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주)한송아젠스랩이라는 곳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엘지유플러스가 엔에이치엔고도(주)와 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엘지유플러스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 개인정보 유출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규모>입니다. 엔에이치엔고도(주)를 제외한 49개사에서 49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쇼핑몰 솔루션을 제작·판매하는 엔에이치엔고도(주)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원인 및 경로>입니다. 엔에이치엔고도(주) 등 웹호스팅사에서 제작한 홈페이지에 특정 웹페이지의 취약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미상의 해커가 SQL Injection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유출 경로입니다. 해커는 SQL Injection 공격도구 등 각종 악성코드를 '17년 6월 3일 이전에 공격서버에 저장하고, '17년 6월부터 10월 2일까지 중국IP 등 52개의 아이피를 통해 총 5개의 서버에 직접 접속하거나 다른 서버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그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반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업자가 1개사,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내부관리계획 위반사업자가 1개사, 8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위반한 사업자가 중복 포함해 52개사,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 위반 사업자가 35개사,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암호화 위반사업자가 17개사, 9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중 사업폐업으로 인해 개인정보 파기 위반을 한 사업자가 1개사, 그리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가 23개가 되겠습니다. <5> 사업자 제출의견입니다. 엔에이치엔고도(주)의견입니다. 침입탐지나 침해사고, DDos, 취약점, 장애사고 이벤트에 대해 관제업체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아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입차단과 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e나무 시즌4' 솔루션에서 발생 가능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코딩을 적용하였고, 신규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모의해킹과 같은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해 왔으므로 처분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했습니다. 엔에이치엔고도(주)의 관제내용을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43개 사업자 중 16개사는 보안 관제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27개사에 대해서는 보안관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파이오링크가 유출사고 이전에 SQL Injection 공격 시도를 탐지하고 보고한 9개 홈페이지 중 임대형 5개사 중 3개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엔에이치엔고도(주)는 IP 차단 요청, 초동 분석 결과 검증과 대응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온라인 상품구매 페이지'의 경우 SQL Injection 공격을 막기 위한 구문 삽입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업데이트 패치 배포를 통해 해킹사고 관련 페이지에 대한 SQL 취약점을 개선한 것이 확인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브엔터테인먼트, (주)한국리모텍, (주)호수의나라 수오미의 의견입니다. 회사의 전체 매출은 100억 이상이나 이 중 자사몰 이용자로부터 발생된 매출액은 20억원 미만이고, 그 외 매출액은 오픈마켓에서 발생되어 망분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밖에 가산

카메라 등 46개사의 경우 지적사항을 개선하였거나 개선하는 중이므로 선처를 요청해 왔습니다.

<6> 시정조치(안)입니다. 가산카메라 등 50개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이행 결과 제출 등입니다. 또한 (주)더퍼스트터치 등 5개 임대형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큰 엔에이치엔고도(주)에 대해서는 위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합니다.

<나> 과징금 부과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50개사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더퍼스트터치 등 4개사로부터 개인정보 보관·관리를 수탁받았으나,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위탁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엔에이치엔고도(주)를 비롯해서 네오톨 등 1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 외 3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더퍼스트터치 등 4개사의 경우 엔에이치엔고도(주)가 임대형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고, 네일몰(주) 등 6개사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기프트허니 등 5개사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적고, (주)갈라인터내셔널 등 5개사의 경우 위반사항이 경미한 점, 그리고 가산카메라 등 20개사의 경우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기업 규모를 고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부과기준 제5조를 적용하여 엔에이치엔고도(주) 등 13개사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기준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엔에이치엔고도(주)의 경우 임대형 쇼핑몰사업자의 임대료 수익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으로 하여 기준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이내인 엔에이치엔고도(주) 등 13개사에 대해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모두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입니다.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다만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기준금액의 가중·감경을 거쳐 엔에이치엔고도(주) 등 13개사에 대해 총 4억 6,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가산카메라 등 50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주)퍼니뱅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 및 감경입니다.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소기업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주)퍼니뱅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 700만원을 (주)퍼니뱅크에 대해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양이용품꼭꼭이네 등 10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역시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중 사항입니다.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인 (주)더퍼스트터치 등 5개사에 대해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각 가중하고, 고양이용품꼭꼭이네 등 4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중할 사유가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겠습니다. 감경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투세븐슈즈에 대해 기준금액의 40%인 400만원을, 소기업인

(주)퍼니뱅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각 감경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는 (주)더퍼스트터치 등 4개사에 대해 과태료 각 1,300만원을, 고양이용품꼭꼭이네 등 5개사에 과태료 각 1,000만원을, 투세븐슈즈에 9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가산카메라 등 50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역시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주)엘지유플러스는 같은 위반행위로 지난 '17년 12월 21일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2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중 사항입니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3개인 (주)기프트허니 등 11개사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가중하고, 위반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가산카메라 등 14개사에 대한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각 가중하겠습니다. 감경 사항입니다. 에이비씨게임 등 5개사에 대해 자본잠식으로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주)발کم, 안라이프, 투세븐슈즈 3개사에 대해 당기순손실 발생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40%인 400만원을 각 감경하겠습니다. 소기업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주)더휴먼네트웍스, (주)퍼니뱅크, 휘리스트 3개사에 대해 당기순손실 발생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각 감경하겠습니다. 최종 과태료는 50개사 총 5억 5,6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의 미파기 유효기간제 위반입니다. (주)갈라인터내셔널 등 23개사가 해당됩니다. 기준금액은 역시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중할 사유가 없는 (주)갈라인터내셔널 등 23개사에 대해 기준금액을 유지하겠습니다. 감경 사항입니다. (주)에이비씨게임 등 5개사에 대해 완전자본잠식 등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된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기업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휘리스트(주)에 대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갈라인터내셔널 등 17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각 부과하고, 휘리스트(주)에 대해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며, (주)에이비씨게임 등 5개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 법을 위반한 50개사에 대해 (1)~(4)까지의 위반사항을 사업자별로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8억 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라> 별칙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활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주)퍼니뱅크는 '15년 7월 23일 폐업하였지만 탈퇴한 이용자 359,934명의 개인정보를 조사시점인 '18년 7월 16일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에 조사결과를 이첩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주요 웹호스팅사와 쇼핑몰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인식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9년 9월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20년 1/4 분기 중 이행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사안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검찰 통보, 그리고 방통위가 자체 인지한 사업자 등 모두 5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의 취급과 운영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특히 검찰 통보 사업자 가운데 42개 사업자가 엔에이치엔고도(주)라는 쇼핑몰 솔루션을 이용했던 공통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중점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결과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엔에이치엔고도(주)를 제외한 49개사에서 무려 493만여 건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해커가 SQL Injection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처분안에 대해 엔에이치엔고도(주)는 모의해킹과 같은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해 왔기 때문에 처분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43개 사업자 가운데 16개사는 보안관제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27개사는 실질적으로 보안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사업자 몰에서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제외해 달라는 워브엔터테인먼트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별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만을 내린 것, 그리고 폐업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주)퍼니뱅크에 대해 벌칙을 내린 상정안건 원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또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최종 과징금을 보면 엔에이치엔고도(주) 솔루션을 제조해서 판매한 회사는 과징금이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써서 어떤 결함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43개가 이 솔루션을 사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과징금을 물었는데, 정작 물건을 판 회사는 1,700만원이고 다른 곳은 7,900만원, 5,300만원, 특히 5,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스타디움이라는 업체는 종업원이 겨우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영세 규모에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5,3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물론 솔루션을 직접 구매했으니까 임대형 사업자가 아니고 독립형 사업자이지요? 그렇게 본 것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위 불량품을 팔았는데 사서 쓴 업자는 과징금을 더 많이 물고, 불량품을 제조해서 판매한 사는 오히려 자기들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1,700만원밖에 과징금을 물지 않고, 이것이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판매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 어날 텐데 불량품을 팔아도 자기들이 과징금 무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적다면 우리 시장에

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제조사들이 불량품을 팔면 자기들이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런 신호를 줘야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작하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팔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 1,700만원을 너무 적게 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규정대로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 입법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과징금 산정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책임이 더 큰 사업자가 적을 수 있고, 책임이 약한 사업자가 좀 더 많이 과징금이 부과가 된 이유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액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아까 허 욱 위원님께서 정리를 다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안건을 다루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각종 유형으로 위반된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전부 다 1년 합산한다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말하자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지금도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출되는 형태도 보면 관리자가 인식이 소홀해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 경우처럼 SQL Injection을 통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조사에 협조해 줬을 때 30% 이내 추가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사업자는 국가 기관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사방해의 경우, 가중은 많이 하더라도 조사에 협조했을 때 감경해 주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가 고시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공정위 소관 개별법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과징금 부과기준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있긴 있지만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100분의 30 이내로 되어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에 협력하는 경우 조금 감경해 주는 이유는 저희가 조사에 대한 강제 권한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과징금을 부과를 맞을 수 있는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 저희가 어떤 처벌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엔에이치엔고도(주) 같은 웹호스팅사, 이런 회사의 보안 수준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안 수준 부분은 엔에이치엔고도(주)는 이 사건 이후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증받는 것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조금 다른 사안 이기는 한데 인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결국 사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서비스의 수준, 그리고 관리 비용을 고려해서 웹호스팅사나 솔루션 사업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웹호스팅 사업자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수준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과기정통부와 협조해야 할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위·수탁사업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이 일반적으로 되다 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호간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업자 제출 의견은 다 받았는데, 혹시 심결장에 나와서 의견진술 하겠다는 사업자는 없었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저희가 사전 통지할 때 의견진술 여부를 알려오도록 안내는 하고 있고, 다만 가장 큰 사업자인 엔에이치엔고도(주)의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스팅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 주요 큰 호스팅 사업자들이 5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호스팅 사업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호스팅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호스팅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쇼핑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방통위가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차제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기본법이나 제조물 배상 책임법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상품의 경우에는 그 특성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제품 출시 이후에, 즉 판매 이후에도 해킹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다면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라는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위탁·수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반드시 책임지면 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구매했던 쪽에서 자기 책임 하에 개인정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영세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호스팅사, 쇼핑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처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일부 벌칙 조항까지 처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수탁 관계뿐만 아니라 판매·구매자의 경우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도 그 의견에 추가를 하면 구매자도 물론 계속 보안의식을 가지고 해킹당하지 않도록 솔루션을 운영할 때 계속 사후 자기 책임 하에 해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당초에 제조한, 또 판매했던 엔에이치엔고도(주)의 경우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불량품을 판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개인정보들이 유출됐다면 자기들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론 당사자 간 구매자와 판매자 간 서로 사적인 송사를 벌인다는가 해서 변상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웹호스팅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의식 또 책임의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당초 제조할 때부터 제대로 된 제품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9-41-212~239)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아래와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28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제1항,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배경입니다. 엔에이치엔고도(주)가 자사의 솔루션을 이용하는 쇼핑몰사업자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로 알려진 28개사와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신고한 1개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엔에이치엔고도(주) 관련 28개사의 경우 '18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 현장조사를 했고, '19년 2월부터 3월까지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진신고한 (주)휴롬의 경우 현장조사는 '18년 7월에, 그리고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접수는 '18년 9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 29개사 중 BOWLERS WAREHOUSE 등 28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드림의 경우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나> 사업자 일반현황 28개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 개인정보 유출경로 및 내역입니다. 28개사 중 BOWLERS WAREHOUSE 등 27개사는 미상의 해커에 의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관리자계정을 탈취당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상의 해커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가 뒤섞인 파일을 메일로 수신한 (주)휴롬의 경우, 유출 원인이나 경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라> 위반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지연신고를 한 사업자가 12개사,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위반사업자가 8개사,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 위반 사업자가 11개사,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암호화 위반사업자가 3개사입니다. 7페이지 시정조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BOWLERS WAREHOUSE 등 28개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입니다. 과징금 부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20개사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와이지스스포츠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19개사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들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먼저 BOWLERS WAREHOUSE 등 10개사의 경우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기업규모를 고려했고, 기간산업(주) 등 7개사의 경우 위반사항이 경미한 점, (주)휴롬의 경우 유출원인과 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주)브랑누아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많지 않아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련 매출액입니다. (주)와이지스스포츠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홈페이지 매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인 5억 1,700만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를 적용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1,08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40만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입니다.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 43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OWLERS WAREHOUSE 등 2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의무를 위반한 기간산업(주) 등 12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가중 사항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인 나모씨앤에스 등 9개사에 대해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각 가중하겠습니다. 감경 사항은 소상공인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미담푸드에 대해 기준금액의 40%인 400만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최종 과태료는 나모씨앤에스 등 8개사에 대해 과태료 각 1,300만원을, 기간산업(주) 등 3개사에 대해 과태료 각 1,000만원을, 미담푸드에 대해서는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반한 BOWLERS WAREHOUSE 등 20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가중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인 (주)휴롬에 대해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하겠습니다. 감경입니다. 소상공인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미담푸드, 지나에드, (주)과란별 등 3개사에 대해 기준금액의 40%인 400만원을 각 감경하고, 중기업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주)메디포럼에 대해 기준금액의 20%인 200만원을 감경하며, BOWLERS WAREHOUSE 등 20개사 모두 의견 제출기간 내에 법규 위반사항을 시정하였으므로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2개 이상의 사유로 과태료 감경 시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감경의 최대금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과태료입니다. BOWLERS WAREHOUSE 등 19개사에 대해 과태료 각 500만원을, (주)휴롬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9년 9월에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20년 1/4분기 중에 이행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 안건은 <의결안건 다>와 비슷하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것이고, 핵심적으로 엔에이치엔고도(주)도 여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동하기 쉬운데 차이를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전 안건의 경우 엔에이치엔고도(주)의 솔루션 'e나무 시즌4'라는 솔루션을 사용한 사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고, 'e나무 시즌4'라는 솔루션에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엔에이치엔고도(주)에 책임을 묻고 여타 사업자에 대해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2017년 9월에 발생해서 저희 방통위에서 조사하는 중 '18년 8월에 또 엔에이치엔고도(주)와 관련된 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엔에이치엔고도(주)가 먼저 방통위에 알려 왔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엔에이치엔고도(주)의 솔루션을 사용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 전 사건과는 달리 엔에이치엔고도(주) 솔루션에 별다른 취약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관리자계정을 잘못 관리해서 그 관리자계정을 탈취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기 때문에 조사 시점도 각각 다르고, 유출경로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전 안건과 분리해서 상정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그러면 쇼핑몰사업자 1개사는 자진신고를 했지만 28개사는 전부 다 엔에이치엔고도(주)가 개발한 홈페이지에 일종의 임대형 사업자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임대형 사업자입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런데 피심인 28개사의 위반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지연신고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정기 점검하는 것의 의무 위반, 그리고 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의 전송구간 암호화 의무도 위반했고, 전반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사업자는 전반적으로 종업원 한두 명, 물론 매출액은 조금 많습지만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웹호스팅사나 쇼핑몰 임대사업자들이 속한 협회나 단체가 있으면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라고 봅니다. 사업자들의 자율 점검 독려와 함께 교육에 좀 더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아서 유출된 사고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웹호스팅 사업자들도 자기들 솔루션을 이용하는 쇼핑몰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웹호스팅 사업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고 그 호스팅 사업자의 솔루션을 이용하는 개별 쇼핑몰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시다만 그러한 쇼핑몰사업자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또 의견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계속해서 <보고안건 나>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유선분야 유통망의 음성적 거래행위와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선분야와 동일하게 사전승낙제를 추진하되, 사업자 자율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 미비사항을 고려하여 사전 단계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이 건은 2015년 8월에 사업자 자율로 운영한 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서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이후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반을 운영하고, 2019년 3월 이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전승낙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미등록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유도하고 제도도입 후 나타난 문제점 보완 및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 비정형유통망은 대부분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자 피해발생 시 피해구제가 어려워 양성화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매집·딜러는 중개영업으로 판매점 가입 건을 매집하여 대리점에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과 온라인몰, TM 등을 통한 자체판매도 하며, 유선 가입자의 약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비정형판매점 등 미등록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유도하기 위한 계도기간을 3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유선통신 및 결합판

매서비스를 취급하는 유선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판매점 등이며, 제도 운영관련 중요사항 협의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정부, 사업자,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승낙제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업자는 사전승낙제 운영, 대리점의 불·편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 자료 제출을 준수해야 하고, 대리점은 거래대상 판매점 선임 및 사전승낙절차 준수, 불·편법행위의 금지, 거래 판매점의 불·편법행위 관리감독 및 교육실시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점은 사전승낙 취득, 영업장 내 사전승낙서 게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금지, 불·편법 영업행위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으로 기대효과를 보면 첫 번째는 사전승낙을 통해 유선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매집·딜러점 등 음성적 유통점들에 대해 양성화하여 유선시장 유통구조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유선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피해발생 시 책임 명확화로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간 거래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통구조 건전화를 통한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9월 1일부터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판매점 사전승낙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자 자율 사전승낙제가 일부 통신사의 이탈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던 것을 작년 8월부터 사업자들과 다시 꾸준히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유통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각 유통 단계별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대립이 심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무처의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선통신 사전승낙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근거가 있지만 유선통신의 사전승낙제는 도입 초기부터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로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유선전담 판매점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별도의 영업 조직이 없는 중개영업자들, 이른바 매집·딜러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형태가 전체 절반에 가까운 50% 수준입니다. 여기에 온라인 텔레마케팅이 약 20%, 기업 특판행사와 같은 방문판매가 15%, 프리랜서 판매자의 인적판매가 8%, 대형마트의 스킨숍이나 아파트 또는 빌딩 단지에서의 가관영업이 7%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점포가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유선 비정형유통망, 특히 매집·딜러들이 가입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 활용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온라인 영업을 통한 공정경쟁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매집·딜러와 같은 미등록 판매점을 제도권 유통구조로 흡수하고 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 중개영업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선분야 이용자 보호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제도기간 및 향후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선 제도 정착에 주력을 하되, 머지않은 시기에는 무선시장과 마찬가지로 유선시장에서의 규제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 노력도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41-240)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꼭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꼭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12일에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했고 들어온 의견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8일부터 했으며 한국방송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세부사항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정내용입니다. 우선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업적 공익광고가 정부광고, 공익성 캠페인과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무료로’ 그리고 ‘자체 비용으로’라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관련 조항입니다. 방송환경의 변화를 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공익적인 내용의 채널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도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방송채널의 특성,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를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시간대에 따른 가중치 부여 근거 마련 조항입니다. 비상업적 공익광고가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편성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위원회가 고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협회에서 제출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해당 규제의 유지가 과연 타당한지 고민이 먼저 요청된다,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을 규정하는 것은, 또한 무료송출을 강제하는 것은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그리고 방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포털 등 온라인 매체 광고에 대해서도 해당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검토의견은 동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로 개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전반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방송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포털 등 온라인 매체에 대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의무 부과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안 중 변경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고시 정비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할 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 그리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그동안 논란되었던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해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 제외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확산의 수단인 비상업적 공익광고가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안건입니다. 입법예고 때 방송협회에서 규제 유지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지만 이는 방송법 개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과 무료송출은 영국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협회의 의견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환경 변화상을 고려해서 향후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털 등 온라인 매체광고에 대해서도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때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행시기를 3개월로 늦춘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결 주문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은 계시지 않지만 사안에 대해 워낙 관심이 있어서 처장님께서 직전에 이용자정책국..., 오셨네요.

○ 이효성 위원장

- 여기에 와서 앉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보도자료로 입장만을 내고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 과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제 현장에도 가셨는데, 일단 행정법원의 판결 요지를 보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확한 법적 규정,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만 어제 판결 내용을 '페이스북이 이겼다', '방통위가 졌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용자보호와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제도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판결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법원이 말장난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냉소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용제한이나와 관련하여 그 법적 용어의 엄밀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용자 이용의 제한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이용자의 이용제한, 즉 이용자 이익침해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이 기준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의적이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는 항소대로 진행하시고,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법이나 제도의 개선에 집중해야 할 텐데 그 계획에 대해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한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일단은 정확하고 공식적인 답변은 저희가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나와 있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지만, 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과 또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것과 저희가 정말 명확한 하나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처분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틀 하에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환경 하에서 처분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씩하나씩 짚어가면서 항소할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판결이 그동안 저희가 규제를 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미비점이 없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글로벌 콘텐츠사업자 등장과 함께 예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책임이 컸다면 지금은 역시 CP의 책임이나 의무도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같이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법 제도개선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판결이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은 전혀 아닙니다. 접속 변경한 것에 대한 이용자 이익저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한 것입니다. 다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망 이용자 가이드라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사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또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하되, 이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해외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이익침해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계속 법 집행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 판결은 1심이고, 앞으로 2심, 3심까지 판결을 받아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언론에서 제4기 방통위가 추진했던 국내의 사업자 간의 규제 차별화,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불공정 환경에 대한 우리의 개선노력이 혹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무관하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노력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원도 분명히 이번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 즉 이용자 이익이 침해된 부분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편이나, 지연이나, 제한이나의 개념에 있어서 의미를 따지다 보니까 방통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시다만 이용자는 불편한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향후 1심 판결을 항소하는 것과 동시에 분명히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부분들, 또 분명히 사업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CP는 어디까지 책임지고, ISP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된 통신환경, 이용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인터넷의 개방, 공유, 자유 이러한 정신들을 우리가 100% 인정한다 할지라도, 현재 인터넷상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거대사업자들의 어떻게 보면 폭주에 가까운 행위들은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내법들에 의해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 이용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방통위가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철저히 대응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고 위원님이 워낙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법원 판결을 저희들이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최종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용자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 이유, 또 제도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보다 더 명확히 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절대 주눅 들지 말고 2심과 3심 그리고 관련된 대응들을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나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세기의 소송, 세기의 재판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의의가 있는 재판으로 부각이 됐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2가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2심, 3심으로 갈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고 준비를 잘해야겠지요. 거기에는 아까 고삼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용제한’이라는 말의 모호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편을 초래했으면 그것도 이용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판사님들께서는 물리적인 제한을 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그것을 좀 더 잘 대응해야 할 것 같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보호하려면 법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더 보강해야 하는지, 가령 ‘이용자 제한’이라는 말이 모호하다면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해놓으면 앞으로 규제할 때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두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더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홍보, 이번에 언론들이 이것을 ‘세기의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다루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많이 부각됐는데 이것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논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36분 폐회 】